

구 분		
열람·서명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명 이현수 (서명)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성명 정남철 (서명)
확 인 자	정보공개담당관	성명 오경희
작 성 자	정보공개담당관 행정7급	성명 이희준

## 202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8.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 「 202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8. 10.(목) 10:00 ~ 11:47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정남철, 전다운, 이현수, 오경희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팀장, (서기) 이희준 주무관
- ◆ 안 건 : 이의신청 5건, 정보공개제도 운영 2건
  - (2023-49) : 인사 관련 사실 여부 확인 자료 요청
  - (2023-50) : 23.06.23.자 주민 설명회(ppt) 자료 등
  - (2023-51) : 심야버스 노선별 세부 차량확보 방안
  - (2023-52) :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보고(주거정비과-6568)
  - (2023-53) : (주거정비과-3351)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안)'
  - (2023-54) : 2023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 (2023-55) :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3-49) : 기각 - 비공개
  - (2023-50) : 기각 - 비공개
  - (2023-51) : 기각 - 비공개

- (2023-52) : 부분인용 - 부분공개
- (2023-53) : 부분인용 - 부분공개
- (2023-54) : 원안가결
- (2023-55)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49 이의신청 】

안건명 : 인사 관련 사실여부 확인자료 요청

<000 위원>

첫 번째 안건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023-49호 인사과 소관 이의신청건입니다.

<000 주무관>

안녕하세요. 인사과 000 주무관입니다.

<000 팀장>

인사과 0000팀장 000입니다.

<000 위원>

먼저 서울시 기술직 인사 다면평가 산정방식 안에 인사규칙 자료, 이게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거 있습니까?

<000 주무관>

지금 청구인이 요구하는 다면평가 10%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규칙에는 다면평가의 방법, 그리고 결과 활용방법 등이 있을 뿐이지 별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면평가계획, 그리고 7급 이하 승진임용계획에 다면평가를 한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000 위원>

여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확인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점수는 일단 40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면평가 중에 전체 하위 10%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관한 규정은 없고, 5급 승진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까?

<000 주무관>

저희가 규칙이나 승진계획, 다면평가계획에 4급 승진계획에 보면 10명 이하일 경우에 마지막 꼴등이 다면평가 10% 하위에 해당한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다른 계획에는 없기는 합시다마는 이분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다면평가에서 하위를 받으셨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0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10명 이하인 직렬 같은 경우에는 다면평가 하위자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직렬과 형평성이 안 맞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다면평가 하위를 받으신 적이 있고, 또 점수는 40점 이하인데 본인이 10명 중에 앞순위여서 다면평가 하위가 아닌 적이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다면평가 통보를 받으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이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거는 본인이 승진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어떤 걸 원인을 찾고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승진예정자로 실제 회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000 주무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승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 논의를 하는 건데, 본인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계속 물으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 드려야 될지.

<000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공개로 하고 이의신청한 건을 보면 대부분 약간 소청심사에서 다툼 만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자료를 지금 요청하는 거는 현

재 인사위 측 자료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여기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는 자료 중에 승진심사 자료 5번 파일에

1번하고 2번 심사기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본인한테 다 공지가 된 사항 아닌가요?

<000 주무관>

이건 승진심사계획에 공개됐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일단 저희가 논의해서 확정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가 계셨다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이 안건은 비공개 대상이 너무 명확한 것 같고요. 지금 다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소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공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인사관리 5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000 위원, 000위원>

저는 비공개 의견입니다.

<000 위원>

네, 기각 의견 주셨고요.

<000 위원>

혹시 부존재한다고 볼 만한 항목은 없는 걸까요? 5번 파일이 청구대상이 사실 딱 맞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주시면 생각을 다시.

<000 위원>

제가 보기에도 부존재로 볼 여지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섞여 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완전히 없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기각 의견입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인사과 직원분들 들어오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결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비공개 결정하기로 하였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49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50 이의신청 】**

안건명 : 23.06.23.자 주민설명회 PPT자료 등

<000 위원>

두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0호** 신속통합기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000 팀장>

신속통합기획과 0000000팀장 000입니다.

<000 주무관>

주무관 000입니다.

<000 위원>

기존에 제공해 주신 자료는 검토를 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서에 보면 청구인이 신청

한 문서가 4건인데 그중에 이 PPT를 제외한 1번, 3번, 4번이 다 제공이 된 것인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000 팀장>

저희가 비공개로 하기로 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서대문구에서 8월 8일에 정보공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 되는 건 이 PPT 1건이라고 정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000 팀장>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리고 이거 3번 PPT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신 게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비공개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보면 다른 서류들도 다 같은 사업에 대한 건데, 확정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로인데 다른 문서는 공개를 하셨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 내용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00 팀장>

지금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공개를 할지,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는 자료는 계획내용이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자료들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상의 자료이고요. 그래서 계획이 확정이 된 상황, 계획을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든 회의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안 된 회의 자료, 그러니까 확정이 됐거나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저희가 통지를 한 것이고요.

그 외의 자료는 공식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됐고 이런 들은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000 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절차 중에 주민설명회에서 쓰신 자료 같은데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 과정에서는 다 공개가 됐었던 것이지요?

<000 팀장>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를 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예시 자료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000 위원>

제가 고민되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은 이 신청인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자료보다 이거를 요청하신 게 이게 주민설명회에서 이미 공개가 됐던 거니까 공개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고 신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른 아직 의사결정 진행 중인 내부자료와 우리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000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총 4개 자료 중에서 3개 자료는 절차적인 부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비공개하고자 하는 자료는 계획의 내용에 대한 사항들, 뭐 구역계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비사업을 할 때 관련된 어떤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의사를 듣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결정해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자료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주민들께서 이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자료를 보시거나 또 이게 제공이 돼서 자료가 파일 형태로 돌아다니게 되면 지역주민들 내부에서도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갈등들이

더 증폭될 우려도 있고요.

또 신속통합기획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절차상에 봤을 때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작단계라고 하면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저희는 이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하는 것은 앞에 공개한 3개 자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문서 자체에는 이게 비공개라든지 대외비라든지 그런 표시가 전혀 없는데 그 당시에 그런 표시나 안내 이런 거를 하셨었나요?

#### <000 팀장>

제가 현장에서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설명을 돕기 위한 자료로서 저희가 보여드린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의사표명을 하시는 것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주민들께서 자료를 그러면 우리한테 배포할 수 없냐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는 배포는 어렵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000 위원>

이거 확정은 언제 될 예정인가요? 지금 계획상.

#### <000 팀장>

정비계획의 확정은 사실 주민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정비계획 입안절차가 끝이 나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빨리 된다고 하면 저희는 연내에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지역에서 내부갈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말씀하신 5호 사유로 만약에 비공개할 경우에는 확정되면 그때는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000 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회의를 진행할 때의 자료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이 된 자료가 아니라, 확정이 된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공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공개를 하게되면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이 대상들이 굉장히 커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사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견서를 낼 때도 두 가지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000 위원>

홍은동 일대는 아직 정비예정구역 지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000 팀장>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정보공개청구 사안이 모두 네 가지인데 네 번째 추가 편입토지 소유자한테 보낸 안내문 및 우편 발송내역도 공개해달라고 신청인이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000 팀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공개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공개를 할 때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소나 이런 것까지를 다 공개하

지 않고 그 발송내역들의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자체를  
구청에서 송부를 했습니다.

<000 위원>

지금 이의신청하신 분이 그러면 결국 이 네 번째 정보와 관련해서는 부분공개를  
하신 건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던 거지요?

<000 팀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구요. 저희 쪽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고  
요. 8월 8일에 구청에서 통지를 했습니다.

<000 위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일단 질의를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잠깐 나가 계시고 의결한 다음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비공개와 관련된다면 5호, 8호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000 위원님께  
서 질의해 주신 청구내용, 정보공개청구서 4번이 지금 부분공개 돼서 만약에 이것까  
지 판단한다면 이거는 개인정보 부분으로 해야 될 수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면서 판  
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4번 항목까지 됐다고 봐야 할까요?

<000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일단 주민설명회 자료만 보면,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의  
사결정 과정 중에 내부자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고민이 되기는 했  
었는데, 8호 사유에 해당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5호, 8호 같이 병기해서 기각하

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000위원>

주심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장일치로 되셨네요.

그러면 소속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50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51 이의신청 】**

**안건명 : 심야버스 노선별 세부 차량확보 방안**

<000 위원>

세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1호** 버스정책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주무관>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000 주무관입니다.

<000 위원>

그런데 청구내용에 별표 별표 별표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두 공개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000 주무관>

청구서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심야시간 올빼미버스 확대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방침서는 부분공개로 해서 나갔는데, 이 부분공개로 해서 처리한 일부 부분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공개되는 정보로는 부분공개한 정보가 청구내용에 별표처리 땡땡땡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이 심야시간 올빼미버스 확대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인 서울시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소통광장 사이트에서 열람을 할 시 이 붙임2의 아랫부분은 다 이런 점점점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까지도 모두 다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가 요청 들어온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차간격 단축해서 3개 노선 12대를 증차하겠다는 거는 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여기 형광펜으로 적혀진, 예를 들면 사각형 2번 안에 들어 있는 형광펜 표시는 해당 승객수라든지, 그다음 3페이지상으로도 해당 승객수 이거는 비공개하겠다는 것이고.

3번 추진계획이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붙임2 7페이지 이게 결국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다 비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 <000 위원>

지금 담당자께서는 이 비공개 사유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 중이라고 계시를 해주셨는데 현재 그러면 각 운수업체들과 의사결정된 상태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운수업체들에서 각각 이 노선에 몇 차 증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시와 다 양해가 구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내부의 계획인 상태인 건가요?

#### <000 주무관>

일단 이 문서가 만들어질 때는 내부계획 수준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올빼미버스 확대는 작년 12월자로 확대가 다 된 상태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그 부분 거부 사유 중에 문제의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중이라고 하는 그 사

유는 조금 적용하기 어렵게 된 거 아닌가요?

#### <000 주무관>

그런데 이게 중간에 계속 차량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계속 방침이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수회사들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내용이 많이 바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의사결정 사항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이 노선 증차를 위한, 올빼미버스의 확대를 위한 차량확보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수회사별로 어느 노선에서 어떤 인가대수를 갖고 와서 할 것인지는 계속 내용이 바뀌어서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중간단계이니까 최종 결정사항과 내용도 상이하고 실익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인가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운수회사별로 어떤 노선의 어떤 차를 차출해서 심야버스로 노선에 투입할지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예요. 운수회사들 간에서도 다른 회사는 어떤 버스에서 어떤 차를 뺐는지 이게 정보가 공개되면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순간 운수회사들 간에도 이게 내용이 다 공유가 되는 건데요. 그 경우에는 운수회사들 간에 앞으로 저희가 버스노선 정책을 할 때 저번에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해 줬는데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서로 시시비비가 갈릴 우려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5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000 위원>

하나 더 확인할 건 지금 작년 12월에 이 계획이 확정이었다고는 했는데 이런 버스를 뭐 증차를 한다든지 노선을 아니면 변경한다든지 이러려면 변경인가를 관련법상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변경인가까지 다 끝난 그런 단계는 아니신 거지요?

#### <000 주무관>

변경인가까지 다 끝났고요. 작년 11월에 통보 시행문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변경인가가 다 나간 상태인데 변경인가에 대한 내용과 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심야버스(올빼미버스) 확대를 위한 차량확보 방안의 내용이 조금 내용이 상의해서 변경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된 상태고요. 이거는 중간단계 과정이라서 내용도 상의해서 이거는 비공개 처리를 시행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노선 확정된 거는 공개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업체가 몇 대를 증차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공개된 상황이라는 거지요?

<000 주무관>

그 부분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침서에 있는 정보하고는 최종공개된 정보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가정보 중에 약간 회사별로 모든 노선의 인가가 다 전체적으로 다 100% 공개가 되지 않고 내밀한 부분의 인가가 세부적으로 존재하는데 대시민 공개를 할 때는 내밀한 부분의 인가는 빼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다 나간 상태입니다.

<000 위원>

그러면 혹시 이 한글문서 9페이지처럼 어떤 업체가 몇 대 늘렸다 이렇게까지 공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개되는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지.

뭐 [REDACTED]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확정된 공개된 자료도 이 정도 정보는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00 주무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양식대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최종공개된 자료를 공문을 나온 정보를 다 반추해 보면 운수회사에서 몇 대 증차했는지는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추론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000 위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담당자님은 나가 계셨다가 의결 후에 들어와 주십시오.

먼저 주심을 맡으신 000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이 5번 문서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상에 만들어진 문서이고, 그다음에 지금 변경인가 까지 끝났다고 하면 사실 의사결정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상에 만들어진 문서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조금 다르게 된 면이 있어서 이걸 공개를 하는 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왜 최종은 다르게 되느냐 이렇게 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7페이지의 붙임2 문서인 것 같은데요. 증차대수, 차량확보, 이 운수회사는 어떻게 단축을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식의 경영과 관련한 내용이 좀 들어 있어서 저는 5호보다는 7호 사유로 비공개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000 위원>

7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자는 말씀이십니다. 기각 의견 주셨고요.

<000 위원>

저는 이의신청 인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5호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다 확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7호 사유만 검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 운수업체들의 경영상의 내역이라기보다는 인가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확정된 내용이고, 확정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자료가 비공개 사유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지금 이 자료 중에 특별히 7호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000 위원>

인용 의견 주셨고요. 000 위원님.

<000 위원>

주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영상 비밀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운영수지라든가 그다음에 각각 노선에 따라서 각각 여객을 갖다가 배차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인기가 많은 곳에 노선을 갖다가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업체 간에 서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진행과정을 어떤 참여하는 업체들이 미리 알게 되면 앞으로라도 의사결정 하는 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갖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논쟁들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선 의사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서, 상황이 결과 부분과 조금 다르다고 해도 이거는 지금 규정상으로는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버스운송업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무부처 담당자님 참석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의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3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비공개 사유는 경영상 비밀, 제7호입니다.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51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52 이의신청 】

안건명 :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보고(주거정비과-6568)에 대한 공개청구

<000 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2호** 주거정비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주무관>

서울시 주거정비과 000입니다.

<000 위원>

일단 청구인의 지위인데요. 청구인께서는 두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이시라든지 그런 어떤 연고는 없으신 게 맞나요?

<000 주무관>

제가 이의신청 내신 다음에 전화통화를 했고 조합원인 경우는 보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000 위원>

그런데 관련은 없으신데 특히 이 6568 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두 조합 관련 점검결과를 공개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긴절한 사유가 있으시던가요?

<000 주무관>

이분한테 이거를 요청하신 특별히 요청하신 사유가 있으시냐 여쭙봤더니 검색을 해서 나온 게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요청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00 위원>

그냥 단순한 궁금증 그런 게 있으신 청구인이신 것 같네요. 5호 사유도 비공개 사유로 제시하셨던데 이거는 뭐지요?

<000 주무관>

5호에는 조사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조합의 모든 것들을 조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될 수가 있어서 5호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000 위원>

지금 공개부분 결정을 결국은 하신 건데 앞부분 점검기간도 공개를 안 하셨는데 이 점검기간을 공개 안 하실 만한 특별한 고려 사유가 있었나요?

<000 주무관>

저희가 점검기간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조합이 거의 300개 조합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내 조합을 먼저 해달라고 항상 이렇게 전화로 민원을 아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간까지도 처음부터 공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민원 때문이기는 한데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 어디인가에 딱 떨어지는 사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민원 때문에?

<000 주무관>

민원도 그렇고요, 전문가분들이 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점검이라는 게 해당 조합과의 관계이지 다른 분들은 아실 상황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00 위원>

표의 타이틀 부분에 구역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조합장 이것들까지 비공개할 이유가 있을지..그다음에 로마자 3의 점검결과를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000 주무관>

제 담당자 생각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님들만 같이 공유해야 되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비공개 처리한 거는 있었습니다.

<000 위원>

조치계획은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어쨌거나 청구인이 이 표가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열개로 만들어진 정리표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적출내용이라든지 관련근거나 조치의견이 뭐다라는 이런 항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봤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000 위원>

다른 추가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일단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잠깐 나가 있다가 들어오십시오.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청구인께서 원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비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로마자 이외의 점검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점검기간도 비공개했는데요. 이거는 9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생각을 해 봐도 결국은 다른 조합원들이, 이때 특정 조합 점검하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 민원 때문에 비공개하는 거는 타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점검기간은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그 표에 상단이니까 로마자 2 같은 경우에는 구역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조합장 이렇게 색깔 넣어서, 음영 넣어서 만들어진 그 제목 부분 정도는 로마자 2는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로마자 3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마자 3에 표의 상단들은 이게 지금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몇 건 나왔다고 하는 게 대충 이렇게 하면 짐작

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돼서 로마자 3은 그대로 다 비공개로 나가고요.

다만 2페이지에 구분, 연번, 적출내용, 관련근거, 조치의견 이 제목도 공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별 실익은 없지만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가리신 면도 있고, 또 아까 담당자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서 표에 상단 정도는 공개하겠다는 말씀하셨다고 하시니까요.

#### <000 위원>

부분공개 의견 주셨지요. 부분인용으로 해서요.

지금 점검기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로마자 2 표 상단. 그리고 지금 로마자 3의 주요 적출 내역 중에 항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000 위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는 비공개 사유는 5호 감사감독 사유 이거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부분인용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어느 조합이 감사감독 대상이 됐는지도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같은 동일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부분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비공개 사유는 5호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000 위원님.

#### <000 위원>

저도 비공개 사유가 감사감독에 해당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점검기간, 아까 양식에서 헤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까 주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점검기간은 아까 부서에서는 민원 우려라든가 어떤 점검기간 요구하는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2월에서 3월 10일까지 점검을 한 거를 5월 1일자로 지금 결과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나서 바로 이게 결과보고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업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데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

을 하다 보면 점검은 미리 했었는데 결과보고가 좀 늦어진다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점검기간을 비공개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000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에 지금 동의하신 결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비공개 대상은 5호, 7호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000 주무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공문 말고 붙임파일에 대해서도 혹시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1, 2가 있거든요.

공문 내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요. 그것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00 위원>

적출사항 및 조치계획하고 자치구 공문 말씀인가요?

<000 주무관>

맞습니다.

<000 위원>

비공개일 것 같기는 한데 주심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000 위원>

5번 문서하고 결합되어서 이거는 비공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000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담당자님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의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입니다.

한 분은 비공개 사유를 조금 달리 보시기는 했지만 일단 다수 의견은 5호, 7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52호**는 “**부분인용**”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분공개되는 부분은 아까 주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자 2의 점검기간하고 표 상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추후에 아마 공지하시기로 했던 그거하고, 3번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주요 부분 중에... 주무관님,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3번 부분에.

<000 주무관>

표 타이틀입니다.

<000 위원>

맞습니다. 타이틀만 공개하는 걸로요. 주요 적출내역 여기 부분이지요.

이 부분 표 상단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 의안번호 2023-53 이의신청 】**

안건명 : (주거정비과-3351)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안) 문서

<000 위원>

그러면 다섯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3호** 주거정비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주무관>

주거정비과 000입니다.

<000 위원>

이제 부분적인 내용이 공개는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 전부를 지금 공개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분공개를 하셨고요. 그 문서를 보시면 심의대상-부분공개 내용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비공개이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000 주무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의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이 방침서가 아니라 안내문에 들어갔던 내용을, 어차피 그분들이 필요하신 것은 저희가 안내를 했던 내용, 그리고 구역계 변경기준안에 대한 내용이 주된 골자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의제기의 주된 내용은 어쨌든 본인은 방침서 자체를 받고 싶다는 요지이셔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다시 방침서를 공개를 하는데요. 다만 내부검토 부분이라든지 또 자문위원분들, 법률자문해 주신 변호사분들의 내용, 그리고 일부 구역들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세부사항들,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비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해 드린다 그런 취지입니다.

<000 위원>

그런데 그 외에는 특별한 이의신청 사유가 따로 없고 그냥 비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문서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지금 노란색으로 마킹을 한 이 부분만 지금 공개를 해달라는 취지인가요?

<000 주무관>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공개해 드린 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방침서 양식이 아니라는 거에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방침서 양식은 빼고 주된 골자의 내용들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표지랑 모든 형식을 갖춰서 달라는 게 요지이시더라고요.

<000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외에는 다 공개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000 주무관>

맞습니다.

<000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공개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란색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 비공개 사유로 5호... 이 지금 내용들은 다 검토 중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겁니까?

<000 주무관>

검토 중인 사항도 있고, 또 변동이 가능한 사항들도 있고요. 현황들이라든지 또 예시를 들어드린 부분들은 일부 유동적입니다.

<000 위원>

이건 후보지는 언제 확정되나요?

<000 주무관>

확정된 건 저희가 수시 모집을 하고 있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확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요.

<000 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이 됐나요?

<000 주무관>

이게 수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확정 건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은 저희가 확정을 했더라도 반대동의율이 많으면 또 이게 선정지 후보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약간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이나 지난 문건인데 그러면 1년 반 전에 후보지 변경기준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이 이게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이 미착수 5곳이라는 이것은 검토 중인 사항이라는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000 주무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안전요청서에 저희가 검토 중이어서가 아니라 저희는 보시면 일정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기가 가능한 거 이걸 요점으로 써드렸었거든요.

<000 주무관>

저는 아직 이게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000 주무관>

네,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시행이 됐었던 건데 지금 이번에 안전으로 올라와 있는 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착수가 5곳인 것이 현재는 또 다른 데이터로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정말 관공서에서 나가면 이게 뭐랄까요, 변동치 않을 데이터로 보시고 이걸로 주장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지요.

<000 위원>

문서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기준에 대한 자문받으신 내용이 있는데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준이 정립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하셨나요?

<000 주무관>

정립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구역계로 정해져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공모시점으로 하고, 추가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추가로 편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사실 공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냥 이 문서 자체의 겉표지를 받고 싶다는 게 이분의 취지이시기는 하거든요.

<000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 하실 때는 그렇게 구두로 그냥 내용을 통지하시는 게 아니라 문서 자체를 공개하시는 게 원칙은 맞아요. 그것은 청구인이 요청하신 게 맞는 요청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더 질문 없습니다.

<000 위원>

다른 추가질문 없으신지요.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나가 계셨다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도 이 부분이 조문은 맞기는 하지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논의되는 것과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자문의견은 전부 다 비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부분공개인데, 현재 여기 지금 비공개 이 노란색 마킹한 거는 비공개 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결로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저는 일단 5호가 해당성이 없어 보이고요.

8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비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한글 1페이지에 미착수 5곳 이게 왜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는 검토배경 밑에 표 이 부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에는 저희에게 주는 거라서 이렇게 A구역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정 구역이 나와 있어서 조금 8호의 해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나머지 검토배경, 뭐 기준확립 필요 이런 것들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산정일 적용기준 이것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글 기준으로 1페이지 표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인용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한글파일로 본문 첫 번째 페이지 밑에 아랫부분의 검토배경하고 밑에 A 구역, B구역, C구역 나오는 이 표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 미착수 5곳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모 2번의 검토배경을 보시면 이게 전부가 다 비공개 대상인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 재량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서울시 스스로 정하는 그런 일종의 재량준칙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메모 2번의 검토배경에 첫 번째 동그라미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요인이 발생했을 때 기준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절차나 동의요건 이런 걸 명확히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소리라 이걸 공개 안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밑에 보시면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표시가 있고, 또 선정조건을 보면 ■■■■■ 이러니까 ■■■■ 있는 어디인가 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있는 그 표는 공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문결과인데 이거는 지금 법률자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문 내용에 관한 거는 공개 할 이유가 없지요. 기존 사례조사는 더더욱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 부분은 원칙적인 내용이라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 <000 위원>

디테일하게 보셨는데요. 000 위원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아까 앞에서 두 분 말씀 주신 검토배경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1

페이지의 표는 비공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자문받은 것은 공개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5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시했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그 과정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크게 실익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법률자문 그거 하나로만 갖고서 결정을 했냐라는 또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갖다가 적용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했다라는, 최종적으로 했다라는 그게 실제로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상황인데요. 그 진행되는 과정까지 해서 굳이 이렇게 논란을 갖다가 추가로 일으킬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의 검토배경의 첫 번째 꼭지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좀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검토배경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 이 내용은 너무 일반적이고 아마 당사자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거 공개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박스 부분은 다 비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법률자문도 지금 대부분 이 자문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을 의견을 주셨는데, 다만 000 위원님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은 비공개 의견이 일단 많아서 비공개로 일단 하는 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은 비공개하더라도 자문의견을 공개한다는 의견은 000 위원님만 의견을 주신 거고, 000 위원님은 이 부분은 비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문위원 부분은?

#### <000 위원>

자문내용이지요. 누가 어떤 얘기하셨다 이거는 비공개이고, 기존 사례도 이거 비공개하고요. 다만 네모 검토의견, 권리산정기준일 별도로 적용해야 된다는 이 검토의견을 공개

하는 게 무방하다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확대 부분은 별도로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겠다는 이걸 지금 이미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고려사항이 법적 안정성 확보와 투기방지 이거 고려해서 별도로 정한다는 그 논거라서 이거 논거를 공개하는 게 공익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공개 의견 말씀드렸던 겁니다.

<000 위원>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마지막 부분 검토의견만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이 부분은 000 위원님 의견처럼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보아서 이걸 공개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소개 부분은 공개해도 좋겠다 말씀하셔서 검토배경, 미착수 5곳 이것도 공개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000 위원>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결국 지금 공개해야 될 것은 이 미착수 5곳, 그다음에 검토배경의 동그라미 2개 항목,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마지막 검토의견 이 부분은 공개하는 걸로 지금 세 명의 의견이 정리가 됐고요. 000 위원님은 자문내용까지도 더 확대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부분공개로 해서 정리를 할까요? 다수 의견으로요.

그러면 담당자님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의결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임으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저희가 지금 의결한 사항은 이 부분공개 결정인데요. 지금 공개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5번 파일 변경기준안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미착수 5곳 이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검토 배경 있지요? 이 중에서 박스에 해당하는 것만 비공개합니다. 나머지는 다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박스 2에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 이 부분은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3호는 “부분인용”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의안번호 2023-54 정보공개제도 운영 】**

안건명 :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000 위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4호 정보공개담당관 소관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을 맡으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1번 안전요청서 3페이지에 넣으신 정비내용이 이번에 수정하시고자 하시는 내용 같은데 맞나요? 이 항목을 위주로만 검토해도 되지요?

<000 주무관>

맞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두 개의 법률자문을 받으신 것을 전부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조금 취사해서 받으신 건가요?

<000 주무관>

약간 수정을 해서 지금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께서 1번 안전상정요청서 3페이지, 4페이지 표만 위주로 봐주



시면 될 것 같고요.

변경 부분은 사실 부서명만 변경한 거여서 기존 내용에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신설 2건 부분, 그리고 밑에 약간 표현 변경하는 2개. 첫 번째 2개, 밑에 2개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무관님한테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것도 도시정비 예정지역 관련해서 이것도 검토 중인, 확정 전에 비공개 세부기준에 넣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정신건강과도 이게 의무기록이어서 비공개 사유에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기존 기준과 크게 변화되는 건 아니어서 저는 승인해도 괜찮다는 의견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자세히 보시고 의견 주시고 토의하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모두 다른 추가 질문사항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 가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을 원안 가결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2-54호**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안번호 2023-55 정보공개제도 운영 】

안건명 :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

#### <000 위원>

그러면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5호** 정보공개담당관 소관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안입니다.

이 안건은 제가 주심위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이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이건 그냥 기존에 추가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000 주무관>

이번에는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없고요. 제외되는 거 9개랑, 그리고 부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개방법의 변경 이런 게 35건입니다.

<000 위원>

제외되는 거는 9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외되는 게 좀 중요해 보였었는데요. 제외되는 것 9개 중에 1번, 2번 이런 거는 다 지금 계획에 포함됐다는 거고, 디자인종합계획도 마찬가지로인가요?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에 같이 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이게 사업종료라는 게 사실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당연히 사전 공개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000 주무관>

사업종료라서 이제 더 이상 공개는 안 하고요. 대신 정보소통광장에 정비된 자료 중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이미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00 주무관>

이게 그러니까 정비된 자료 항목이라고 해서 또 다른 항목이 있는데 거기로 넘어갑니다. 사업종료나 이렇게 삭제되는 정보들은요.

<000 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로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안을 원안 가결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2-55호**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